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2020년 경남개발공사 -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경 상 남 도
(감 사 위 원 회)

〈목 차〉

1.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5

2. 상품권(기념품) 구매 및 사용 부적정 ····· 10

3.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 24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남개발공사(OOO팀, OOO팀)

조 치 기 관 경남개발공사(OOO팀, OOO팀)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남개발공사에서는 OO시 OO면 OO리 일원에 OOO세대의 OOO주택을 건설하고 아래〔표〕와 같이 OOOO OOO주택 입주자 모집 인력대행 용역 등 3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표〕 수의계약을 통한 입주자 모집 용역 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회계 연도	부서명	용역명	예산액 (추정금액)	계약일자 (용역기간)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	수의계약 근거
2000	OO팀	OOOO OOO주택 입주자 모집 인력대행 용역	OOOO	2000. O. OO. (2000. O. O.~ 2000. O. OO.)	OOOO	OOOO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마목'
	OO팀	OOOO OOO주택 입주자 모집 인력대행 용역	OOOO	2000. O. O. (2000. O. O~ 2000. O. O.)	OOOO	OOOO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자목', '제8호사목'
2000	OO팀	OOOO OOO주택 임대 운영 및 주택관리 용역	OOOO	2000. O. OO. (2000. O. O.~ 2000. O. OO.)	OOOO	OOOO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자목', '제8호사목'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5호와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5호를 제외한 각 호의 경우와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계약 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각 호 중 제4호 '자목'과 제8호 '사목'을 살펴보면,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의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특정인과의 1인 견적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특수성 등으로 인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그 '특정인' 하나뿐인 경우여야만 한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즉, 다른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사업'과 그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OOOO OOO주택 입주자 모집 인력대행 용역

경남개발공사 OO팀에서는 20OO. O. OO. OOOO주택 입주자 모집 사무소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담당부서 OOO팀장의 합의를 거쳐 사장에게 결재 받은 후 20OO. O. OO. 용역비 54,973천 원의 OOOO OOO주택 입주자 모집 인력대행 용역을 OOO팀장에게 계약을 의뢰 하였고,

계약을 담당하는 OOO팀에서는 20OO. O. OO.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를 법적근거로 하여 여성기업인 'OOOO'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20OO. O. OO. 'OOOO'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OO팀에서는 20OO년 O월까지 OOO세대 계약을 완료예정이였으나 OOOO주택 계약율(OO%(OOO세대)) 저조의 사유로 20OO. O. O. OOOO O차 입주자 모집 인력대행 용역 검토보고서를 재 작성하고, 20OO. O. OO. OOOO주택 입주자 모집 인력대행 용역에 대하여 입주자격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1]이 사용 가능한 공공기관인 'OOOO'와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OO 담당부서인 OOOO팀에 계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20OO. O월에 공문으로 시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사용자 등록 완료 안내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사용자(2012. 7. 30.자 기준)로 OOOO을 포함하여 OOOO, OOOO, OOOOO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앞서 20OO. O월 입주자 모집 인력대행 용역 시에는 'OOOO'와 경남개발공사 직원 OOO 차장 등 O명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주자격심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해당 용역이 경쟁이 불가능하고 특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수의계약)를 법적근거로 하여 'OOOO'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4조(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1)「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OO담당부서인 OOOO팀에서는 해당 용역이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특수성 등으로 인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특정인' 즉 OOOO 하나뿐인 경우인 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입주자 선정 적격심사, 모집과정의 오류 최소화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후 20OO. O. O.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 국민임대주택 임대 운영 및 주택관리 용역

경남개발공사 OOOO팀에서는 OOOO아파트 위탁관리를 위하여 20OO. O. OO. OOOO아파트 임대 운영 및 주택관리 위탁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경쟁입찰로 인하여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OOO 전문기관인 'OOOO'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OO 담당부서인 OOOO팀장의 합의를 거쳐 사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20OO. O. OO. OO 담당부서인 OOOO팀에 OOOO 임대 운영 및 주택관리 위탁 용역계약을 요청 하였다.

그런데 OO 담당부서인 OOOO팀에서는 OOO팀에서 작성한 'OOOO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 위탁 용역' 보고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없이 2OOO년 'OOOO'와 수의계약한 'OOOO주택 입주자 모집 인력대행 용역' 수의계약 체결방안과 동일하게 검토하여 20OO. O. OO. 'OOOO'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복적으로 같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타 공공기관에서 OOOO와 수의계약한 사례를 참고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임대관리 운영을 위수탁할 수 있는 업체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만 가능하므로 공공기관 중 위·수탁을 할 수 있는 업체는 OOOO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향후 업무연찬을 철저히하여 입찰공고를 통한 경쟁입찰로 시행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요청하고 체결한 **실무담당자 OOO팀 OO급 OOO, OO팀(현 OO팀) OO급 OOO와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OOO팀(현 OOO팀) OO급 OOO, OOO팀(현 OOO팀) OO급 OOO, OOO팀(현 OOO팀) OO급 OOO**에 대하여 향후 계약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남개발공사「훈계 등 처분에 관한 내규」제4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앞으로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개 선 요 구

제　　목 상품권(기념품) 구매 및 사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남개발공사(○○○○○팀)

조 치 기 관 경남개발공사(○○○○○팀)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 행사 시 임직원 제공, 내방고객 증정, 각종 사업 및 분양 홍보, 사보 발간 시 기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위해 **【표1】**과 같이 상품권 및 기념품 구매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표1】 부서별 상품권(기념품) 구매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부서명	비고
2017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600	○○ ○○팀	-----
2018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11,10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27,20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판매촉진비	7,20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광고선전비	6,300	○○ ○○팀	-----

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부서명	비고
2019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11,10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58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21,60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1,00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80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90	○○ ○○팀	-----
	----------	자본적지출, 재고자산취득, 미완성토지, 시설비및부대비.	2,000	○○ ○○팀	-----
2020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복리후생비.	11,20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복리후생비.	22,20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4,75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160	○○ ○○팀	-----
2018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7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40	○○ ○○팀	-----

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부서명	비고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5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5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4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5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40	○○ ○○팀	-----
2019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5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4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2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5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4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10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40	○○ ○○팀	-----

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부서명	비고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40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6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10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60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200	○○ ○○팀	-----
2020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5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4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0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20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0	○○ ○○팀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100	○○ ○○팀	-----

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부서명	비고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포상금, 포상금.	200	○○ ○○팀	-----
2017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판매촉진비	7,673	○○ ○○팀	-----
2018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판매촉진비	11,880	○○ ○○팀	-----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광고선전비	6,534	○○ ○○팀	-----
2020	----------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광고선전비	300	○○ ○○팀	-----

출처) 경남개발공사 제출 자료 재구성

2. 상품권(기념품) 구매 예산과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방공기업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공기업 간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해 예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통보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Ⅳ-2-3 '업무추진비' 항목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Ⅳ-4-2 ‘복리후생비’ 항목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퇴직자(예정자)에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의 고가기념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사의 사업예산 등을 지출할 경우에는 Ⅵ-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 항목에서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편성된 예산과목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고,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에서는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사업예산 등의 지출 시에는 편성된 예산과목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지난 ‘2017년 지방공공기관 특별감사(일반분야)’에서 상품권(기념품) 구입과 관련하여 예산과목 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상품권(기념품)의 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각종 홍보 및 기념품 구입 등을 **201-01 사무관리비**(19,550천원), **216-01 행사운영비**(580천원), **216-03 광고선전비**(14,700천원) 및 **216-04 판매촉진비**(19,555천원)로 집행하였고, 창립기념 행사와 근로자의 날 행사 시 임직원에게 배부하기 위한 ○○○상품권을 **216-01 행사운영비**(49,800천원)로 구입하는 등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2】 부서별 상품권(기념품) 구매 현황

(단위: 천원)

연번	행사명	구입물품	용도	예산과목	부서	지출액	지출일자
				합 계		**104,205**	
1	----------	-------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팀	5,600	'17.11.9.
2	----------	-------	격려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 ○○팀	13,300	'18.4.27.
3	----------	-------	분양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판매촉진비	○○ ○○팀	5,400	'18.11.15.
4	----------	-------	분양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광고선전비	○○ ○○팀	1,800	'18.11.15.
5	----------	-------	입주 기념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광고선전비	○○ ○○팀	6,300	'18.12.21.
6	----------	-------	격려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 ○○팀	22,600	'19.1.18.
7	----------	-------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팀	1,250	'19.3.11.

연번	행사명	구입물품	용도	예산과목	부서	지출액	지출일자
8	----------	-------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팀	4,300	'19.3.21.
9	----------	-------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팀	1,250	'19.3.28.
10	----------	-------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팀	990	'19.4.29.
11	----------	-------	격려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 ○○팀	13,900	'19.4.30.
12	----------	-------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 ○○팀	580	'19.8.7.
13	----------	-------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팀	4,400	'20.9.7.
14	----------	-------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팀	2,200	'20.9.7.
15	----------	-------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팀	1,760	'20.9.7.

연번	행사명	구입물품	용도	예산과목	부서	지출액	지출일자
16	----------	-------	분양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판매촉진비	○○ ○○팀	3,390	'17.12.15.
17	----------	-------	분양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판매촉진비	○○ ○○팀	1,570	'17.12.15.
18	----------	-------	분양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판매촉진비	○○ ○○팀	1,995	'17.12.15.
19	----------	-------	분양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판매촉진비	○○ ○○팀	5,400	'18.11.28.
20	----------	-------	분양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판매촉진비	○○ ○○팀	1,800	'18.11.28.
21	----------	-------	입주 기념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광고선전비	○○ ○○팀	6,300	'19.1.25.
22	----------	-------	분양 홍보	사업비용, 영업비용, 판매비와관리비, 행사홍보비, 광고선전비	○○ ○○팀	300	'20.12. 예정

출처) 경남개발공사 제출 자료 재구성

3. 상품권 구입 및 사용을 위한 공사 자체규정 미제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Ⅱ-1-1‘재정건전성 강화’ 항목에서는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여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 내에서 편성하되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정하고 있고,

Ⅳ-4-1 ‘경상경비’ 항목에 따르면 경상경비(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는 전년도 절감예산 수준으로 편성하고, 전년도에 전용으로 감액 집행된 경비예산은 해당 비목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Ⅳ-2-3 ‘업무추진비’ 항목에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 인정 한도 내에서 전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미흡으로 부적절한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사례가 빈발하고,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에 통보[2]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2)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2988(2013.09.30.)호에 따라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3-322호)을 통보함.

권고안에서는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상품권 사용범위 및 용도별 집행 예산과목(복리후생비, 포상금 등)을 명확히 하고, 상품권 지급제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 구매 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 비교 절차를 마련하여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명절, 생일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 예측이 가능한 경우, 자체 계획 등에 따라 본청(본사)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품권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과 수령인의 자필 서명을 의무화하고,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의 즉시 중단,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상품권(기념품) 구입과 관련한 경상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관한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상품권 배부 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수령인 자필서명을 의무화하는 등 부적절한 상품권 구매·사용을 방지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상품권 구매·사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과-○○○○(2013.○.○○.)호와 관련한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타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경남개발공사는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남개발공사 ○○○○부-○○○○(2013.○○.○○.)호에 따라 **【표3】**과 같이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을 2014. 3. 30.까지 완료하겠다는 자체 추진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관련 자체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팀에서는 사보 발간, 사회공헌 활동 등과 관련하여 내부기고자, 우수봉사 직원에게 포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면서도 상품권 지급내역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3】 제도개선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연번	과제내용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추진계획 및 일정	담당자
1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상품권 구입 및 사용 세부지침 마련	없음	○ 제도개선 권고과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규정 마련 : 2014. 3. 30한	○○○○부 ○○○,○○○
2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	○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 구매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 할인율 비교 절차 마련 ○ 상품권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 시행	없음	○ 제도개선 권고과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규정 마련 : 2014. 3. 30한	
3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 예산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에 대한 대장 관리 ○ 상품권 실질 수령여부 명확화를 위한 수령인 자필 서명 의무화 ○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형태로 교환 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증빙 관리 철저	없음	○ 제도개선 권고과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규정 마련 : 2014. 3. 30한 ○ 상품권 배부대장 작성, 수령인 자필서명, 배부대장 비치 : 즉시조치 ○ 상품권을 사회공헌활동 용도로 사용시 수령확인서 또는 기부금영수증 첨부 : 즉시조치	

4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 기관별 정기감사시 상품권 구매.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 ❍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부서별 수시 점검 실시 ❍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 즉시 중단 ❍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환수 등 제재 실시	없음	❍ 제도개선 권고과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규정 마련 : 2014. 3. 30한	
5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없음	❍ 제도개선 권고과제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규정 마련 : 2014. 3. 30한	

출처) 경남개발공사 제출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이 건 발생의 근본원인이 지출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 관리에 있어서 세부지침 부재와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것이고,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후 업무 인계인수 시 누락으로 인해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을 제정하지 못하였으며,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향후 지급 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직원교육을 통해 명확한 업무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과목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관한 기관 자체 규정(지침)을 마련하여 상품권 구매 및 사용·관

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경남개발공사(○○○○○팀)

조 치 기 관 경남개발공사(○○○○○팀)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매년 조직활성화 및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을 고려하여 승진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감사대상기간 중 승진임용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경남개발공사 승진 임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6급		5급		4급		3급		2급	
	☆☆	▼▼	☆☆	▼▼	☆☆	▼▼	☆☆	▼▼	☆☆	▼▼	☆☆	▼▼
2018년 상반기	5	8	1	4	4	1	-	1	-	2	-	-
2018년 하반기	1	2	1	2	-	-	-	-	-	-	-	-
2019년 상반기	-	3	-	3	-	-	-	-	-	-	-	-
2020년 상반기	2	2	-	-	-	2	1	-	1	-	-	-

2. 관계법령 (판단기준)

「경남개발공사 인사규정」 제7조(인사위원회), 제22조(승진방법) 및 「경남개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6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제27조(2급 이하 직원의 승진), 제43조(임무), 제44조(소집 및 의결)에 따르면,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 말일, 11월 말일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점 40%, 경력평정점 40%, 성과평가평점 20%, 포상 및 자격평정점 10%의 비율로 작성된 직종별, 직급별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고순위자 순위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가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개발공사 ○○부서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므로 매년 5월 말일과 11월 말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2급 이하 직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예정인원의 4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승진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만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2018년 상반기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1)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업무 처리 부적정

경남개발공사에서는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점 40%, 경력평정점 40%, 성과평가평점 20%, 포상 및 자격평정점 10%가 반영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2018. 1월 ○○ ○○○○ ○○○의 승진인사 검토 지시에 따라 2018. 1. 22. 기준으로 성과평가평점이 반영되지 않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18. 2. 6. 2018년 상반기 승진계획 보고(○○○○부-○○○) 시 승진임용 대상자를 보고하였으며, 2018. 2. 1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승진임용 대상자를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2]와 같이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의 순위가 변경되었다.

[표2]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변경

구분	소속	성명	성과평가점 누락 평가 순위	성과평가점 포함 평가 순위	비고
3급(기술) 승진임용 대상자	○○○○부	○○○	3	4	
	○○○○부	○○○	4	3	
5급(사무) 승진임용 대상자	○○○○무	○○○	3	4	
	○○○○부	○○○	4	3	

2) 특정인의 승진임용 심사 기회 박탈

경남개발공사 ○○부서에서는 2018년 상반기 승진계획(○○○○부-○○○)을 보고하면서 [표3]과 같이 승진 규모를 직렬별로 사무와 기술을 구분하여 3급 승진대상 수는 기술 2명, 4급 승진대상 수는 기술 1명, 5급 승진대상 수는 사무 4명, 기술 1명, 6급 승진 대상 수는 사무 1명, 기술 4명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4]과 같이 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사무와 기술을 모두 포함하여 4배수 범위 내의 승진임용 대상자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3급 승진대상에 기술 직렬 8명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사무 직렬 4명을 승진후보 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표5]와 같이 기술 직렬 4명이 승진임용 심사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사무 직렬 5급 승진대상 수가 4명으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에 등재된 5명(4배수 범위 내) 모두를 승진임용 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표6]과 같이 1명을 배제함으로써 ○○○이 승진임용 심사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5] 기술 3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서열	소속	성명	평 정 내 역				평정 합계	비고
			근무 평정	경력 평정	성과 평가	포상 및 자격		
1	○○○○팀	○○○	**35.89**	26.00	19.24	3.50	84.63	승진후보 대상자
2	○○○○팀	○○○	**34.40**	26.00	18.15	3.50	82.04	승진후보 대상자
3	○○○○○○팀	○○○	**33.46**	24.90	19.45	3.50	81.31	승진후보 대상자
4	○○○○팀	○○○	34.02	23.90	18.92	4.00	80.84	승진후보 대상자
5	○○○○팀	○○○	33.37	23.00	**19.45**	**3.50**	**79.32**	**배 제**
6	○○○○팀	○○○	34.56	20.50	**19.60**	**2.50**	**77.16**	**배 제**
7	○○○○팀	○○○	34.11	19.98	**18.64**	**3.50**	**76.23**	**배 제**
8	○○○○○팀	○○○	34.31	19.98	**19.30**	**2.50**	**76.09**	**배 제**

출처) 경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표6] 사무 5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서열	소속	성명	평 정 내 역				평정 합계	비고
			근무 평정	경력 평정	성과 평가	포상 및 자격		
1	○○○○팀	○○○	**29.51**	26.00	17.97	0.00	73.48	승진후보 대상자
2	○○○○팀	○○○	**33.24**	20.10	18.51	1.00	72.85	승진후보 대상자
3	○○○○팀	○○○	**32.13**	20.10	17.99	1.00	71.22	승진후보 대상자
4	○○○○팀	○○○	**31.97**	20.70	14.62	1.00	68.29	승진후보 대상자
5	○○○○팀	○○○	30.18	20.70	16.98	0.00	67.86	**배 제**

출처) 경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3) 권한 없는 자의 승진 심의·의결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인사위원회에 '2018년 상반기 승진임용대상자 심의(안)'을 제출하여 승진임용 대상자를 심의·의결하도록 해야 함에도, ○○부서에 작성한 명단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징계 예정인 2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 전원을 인사권자에게 승진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의결을 유도[3]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부서에서 작성한 승진후보자 대상 중 승진 적격자에 대한 심의없이 승진후보자 전부를 승진대상자로 추천·의결하였다.

이후, 2018. 2. 12. ○○ ○○○○으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승진대상자 중 승진임용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 ○○○○이 승진대상 명단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는 그 명단을 재확인하였을 뿐, 결국 ○○ ○○○○이 승진자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승진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가 아닌 ○○○자가 승진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뿐만 아니라 승진임용의 합리성·공정성을 상실하게 하였다.

나. 2020년 상반기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2019. 12. 31. 2020년 상반기 승진계획 보고를 통해 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3급 1명, 4급 1명, 5급 2명으로 승진인원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고순위자 순위로 4배수 범위 내의 승진임용 대상자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표7]과 같이5급 승진후보자 중 1명을 배제한 후 사무직렬 4명과 기술직렬 3명만 포함하여 제출함으로써 ○○○의 승진임용 심사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2018. 2. 12.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 **위원**의 "4급에서 3급이 최대 3명인데 추천인원은 8명인데, 위원회에서 최대 인원을 추천해도 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부장)**은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명단에 올라 있는 전원을 추천해도 된다. 4배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심의 후 인사권자에게 추천하시면 된다. 대상인원을 승진 시키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면 된다"고 대답하였고, ○○**(**○○○ ○○**담당자)**는 "최종 ○○○자가 3명까지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의미다"라고 대답함. 이에 ○○○ ○○**장**은 "최종 판단은 최종 인사권자(○○)가 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발언함.

[표7] 5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서열	소속	성명	평 정 내 역				평정 합계	비고
			근무 평정	경력 평정	성과 평가	포상 및 자격		
1	○○○○팀	○○○	45.14	17.61	17.30	1.5	81.55	승진후보 대상자
2	○○○○○팀	○○○	43.96	16.61	17.87	2.5	80.94	승진후보 대상자
3	○○○○팀	○○○	45.60	16.61	15.62	1	78.83	승진후보 대상자
4	○○○○팀	○○○	40.89	16.61	16.52	1	75.02	승진후보 대상자
5	○○○○팀	○○○	39.92	17.61	17.26	0	74.79	승진후보 대상자
6	○○○○팀 (○○관)	○○○	40.84	15.69	17.17	0	73.64	**배 제**
7	○○○○○팀	○○○	40.83	16.62	10.95	1.5	69.89	승진후보 대상자
8	○○○○팀	○○○	37.55	16.62	13.89	1	69.06	승진후보 대상자

출처) 경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가. 2018년 상반기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경남개발공사 ○○○○부에서는 2018년 상반기 승진임용 업무를 위해 관례적으로 승진임용에 대한 ○○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하였고(2018. 1. 2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당시 ○○실에서 성과평가평점을 입력하지 않아 누락되었으며, 4가지 평정 요소(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성과평가, 포상 및 자격평정) 중 한가지(성과평가)가 입력되지 않았는데도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도록 하는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 인사내규」에 따르면 매년 5월 말일, 11월 말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에는 4가지 평정 요소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성과평가, 포상 및 자격평정)를 일정한 비율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평정 요소가 입력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승진자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였음에도 성과평가평점 입력 부서와 인사시스템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년 상반기 승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승진 규모를 직렬별로 사무와 기술을 구분하여 3급 승진대상 수는 기술 2명, 4급 승진대상 수는 기술 1명, 5급 승진대상 수는 사무 4명, 기술 1명, 6급 승진 대상 수는 사무 1명, 기술 4명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대상자는 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사무와 기술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승진임용 대상자 직렬을 구분하여 올렸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당시 ○○○○팀장 ○○과의 문답에 따르면 인사권자 방침은 기술 2명을 승진시키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3급 승진대상에 기술 직렬 8명을 포함해야 함에도 사무 직렬 4명을 포함함으로써 기술직렬 4명이 승진임용 심사에서 배제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당시 ○○담당자인 ○○○는 명부작성 당시에는 기술직렬 4명이 배제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했고, 문답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볼 때, 2018년 상반기 승진업무 시에 3급 승진대상에 기술 직렬 8명을 포함해야 함에도 사무 직렬 4명을 포함함으로써 기술직렬 4명이 승진임용 심사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부서의 잘못으로 판단된다.

2018년 상반기 승진임용 결정하면서 승진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가 아닌 ○○○자가 승진 심의·의결하도록 한 이유에 대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문답서(○○○○팀장 ○○, ○○담당자 ○○○)를 종합해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하여 단순히 징계 대상자를 제외하고 승진 적격자에 대한 심의없이 대상자 전부를 승진대상자로 추천·의결하는 것 또한 인사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최종 승진자가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가 승진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인사위원회는 그 명단을 재확인하였을 뿐, 결국 ○○○자(○○)가 승진자를 최종 결정하였다. 3급 승진자의 경우 명부 순위 상 1위, 3위를 승진자로 결정하였고, 기술 5급 승진자의 경우 명부 순위 1위가 아닌 2위가 승진자로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을 뒷받침 할 만한 자료나 근거는 없고 ○○○자 독단의 판단으로 승진자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담당자 ○○○는 문답을 통해 승진계획보고를 통해 미리 정한 승진규모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라도 ○○○자가 최초 계획했던 규모 보다 더 많이 승진시키더라도 그 모든 것이 ○○○자의 권한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즉, 승진임용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자의 결정이 우선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사 직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답변이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승진자 결정에 대한 ○○○자의 단독 결정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팀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8년 상반기 승진임용 업무를 처리하면서「경남개발공사 인사규정」 및「경남개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위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적정하게 작성하고, 승진계획과 달리 승진임용 대상자를 작성하여 특정인을 승진임용 심사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승진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케 한 **실무담당자 ○○○○팀(현 ○○○○팀) 행정○급 ○○○, 실무책임자○○○○팀(현 ○○○○팀) 행정○급 ○○을** 경남개발공사「인사규정」제46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0년 상반기 승진임용 업무 부당 처리

2020년 상반기 승진계획 보고 시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고순위자 순위로 4배수 범위 내의 승진임용 대상자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5급 승진후보자 중 1명(○○○)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과평가평점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된 사안이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당시 5급 승진인원은 2명으로 4배수 범위 내인 8명까지 승진임용 대상자를 작성할 수 있음에도 서열 명부 상 6위 인 ○○○는 제외하고 7위, 8위는 포함시켜 최종 7명으로 5급 승진임용 대상자를 작성한 것은 이유없이 특정인을 배제한 것으로 인사부서의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2020년 상반기 승진임용 업무를 처리하면서 5급 승진후보자 중 한명을 배제하고 5급 승진임용 대상자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실무담당자 **○○○○○팀 행정○급 ○○○**을 경남개발공사「훈계 등 처분에 관한 내규」제4조에 따라 **“훈계”**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경남개발공사 ○○은

① 2018년 상반기 승진임용 업무를 처리하면서「경남개발공사 인사규정」 및「경남개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위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적정하게 작성하고, 승진계획과 달리 승진임용 대상자를 작성하여 특정인을 승진임용 심사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승진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케 한 **실무담당자 ○○○○○팀(현 ○○○○○팀) 행정○급 ○○○, 실무책임자 ○○○○○팀(현 ○○○○○팀) 행정○급 ○○을** 경남개발공사「인사규정」제46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② 2020년 상반기 승진임용 업무를 처리하면서 5급 승진후보자 중 한명을 배제하고 5급 승진임용 대상자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실무담당자 **○○○○○팀 행정○급 ○○○**을 경남개발공사「훈계 등 처분에 관한 내규」제4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③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